

‘중심제’ 법제화 속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구체적 낙찰자 결정기준 등 11월 계약예규에 반영 방침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계약예규 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정을 통해 18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9개 기관, 36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3차 11개, 4차 12개, 5차 13개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주독점 방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지면서 시범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최종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계약예규에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 규정 등을 담고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 등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계약예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3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시기를 내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안 부칙도 의미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심사낙찰제 근거 규정과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후 한두달 내 계약예규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아하! 그렇구나

Q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A 입찰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의 계약체결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낙찰자로서는 예약채무 불이행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손해배상 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 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라고 보았다.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 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그렇지만 대법원은 낙찰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건축사사무

소에 작성을 의뢰하여 받은 내역서의 일부인 공사원가 계산서에 이 운으로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낙찰자가 본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 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 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낙찰자가 그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 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 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 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 41659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종심제 하도급계획단가 심사 ‘논란’

세부공종 하도급단가, 입찰단가의 82%로 강제 “이면계약·무리한 하도급 공종 혼합 유도” 지적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하도 급계획단가 심사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다.

세부공종의 하도급단가를 입찰단가의 82%로 강제해 이면 계약과 무리한 하도 급공종 혼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이 입찰금액 심사에서 감점항목 으로 적용하는 하도급계획 심사가 이중 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다.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의 하도급계획 심 사 기준에 따르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한 세부공종에 한해 심사하되, 하도급계 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세부공종별 하도급점수는 세부공종 의 하도급단가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의 100분의60 이상으로,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100분의82 이상인 경우 100 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0 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심사에서 만점을 받는 입

찰자가 복수로 발생함에 따라 감점을 피 하고자 하도급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없고, 상기 조항에 따라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82%에 일률적으로 하도급계획 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종심제는 만점자 가 복수로 발생해 단가와 하도급, 시공계 획 등 어느 항목에서라도 감점이 나오면 수주권에서 떨어져 감점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게임”이라며 “최근 시범사업만 해 도 균형가격에 근접한 세부공종 입찰단 가의 하한율이 79.87%로 이의 82%에 해당하는 65%에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 단가를 고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지만 낙찰 후 시공사 는 하도급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 정하는데 모든 공종에 일률적으로 65% 를 투찰하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며 “만약 65% 이상에 계약해 이익 이 발생한 하도급공종은 문제가 없지만, 65% 미만에 계약해 손실이 발생한 공종 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될 빌미를 제

공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하도급단가를 일률적으로 65%로 준수하기 위해 무리하 게 세부공종을 묶거나 이면 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적정하도급률 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건설산 업기본법령(계약금액 기준 예정가격의 60% 이상·도급금액의 82% 이상)에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하도급계획 단가 심사기준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 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했으나 직접시공하 려는 경우 낙찰금액(직접공사비 합계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해 변경하면 2년간 0.1~0.3점 의 감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향후 시공 과 정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 하도급계획은 1 개월간의 짧은 입찰과정에서 세워 미래 현장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이처럼 직접시공과 하도급 전환 범위를 못 막아 현장에서 계획 적인 시공을 어렵게 해 문제를 낳을 것” 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